

# 서울특별시립 여울여성희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047
----------	------

2012년 10월 5일  
보건복지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2년 9월 24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12년 9월 26일

다. 상 정 일 자 : 제24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

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(2012년 10월 5일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)

- 시립 여울여성희망센터는 성매매 피해여성 등에게 주거 지원 및 기본적인 생활편의와 상담 및 법률·의료·심리지원, 자활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시설로서,
- 주요 위탁사무는 시립 여울여성희망센터 관리·운영, 성매매 피해 여성을 위한 각종 보호사업과 치료·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이며
- 위탁기간은 5년(2013. 2. 14~ 2018. 2. 13)임.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양재대)

#### 1) 위탁사무의 개요

- 본 동의안은 시립 여울여성희망센터 운영법인의 위탁기간이 만료(예정)됨에 따라, 동 시설에 관한 사무를 향후 5년 동안에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2항<sup>1)</sup>에 의거해 서울시 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.
  
- 시장이 상기 센터에 위탁하려는 사무 내용은 다음과 같음.
  - 시립 여울여성희망센터 관리·운영
  - 성매매 피해여성 상담, 법률·의료·심리지원 및 직업훈련 지원 등 구조지원사업
  - 성매매피해자 치료·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

#### 2) 민간위탁 지속여부에 대한 검토

- 여울여성희망센터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로 구분되며,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성매매 피해지원시설의 하나로, 성매매피해자들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일반지원시설임<sup>2)</sup>.

- 
- 1) 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1. ~ 4. (생략)
  -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2)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(지원시설의 종류) ① 성매매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시설(이하 “지원시설”이라 한다)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일반 지원시설: 성매매피해자들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
  2. 청소년 지원시설: 청소년인 성매매피해자들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, 취학·교육

시설운영은 국고와 시비의 50:50 매칭으로 운영 되는(2012년 기준예산 2억2천, 국비매칭 포함) 시립 시설임.

- 상기 시설에 위탁하려는 사무는 성매매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, 그밖에 법률·의료 지원 및 직업훈련 지원 등 각종 구조지원과 자활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므로, 그 특성상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.
  
- 이런점에서 관련분야의 전문적 경험을 축적한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, 따라서 민간위탁 지속을 위해 제출된 본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짐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토론요지 : 없음.

6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.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---

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

3. 외국인여성 지원시설: 외국인여성인 성매매피해자들을 대상으로 3개월(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해당하는 외국인여성에 대하여는 그 해당 기간)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,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

4. 자활지원센터: 성매매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이용시설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# 서울특별시립 여울여성희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04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2년 9월 24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## 1. 제안이유

가. 시립 여울여성희망센터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사회복지시설(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)로서,

나. 성매매 피해 여성 등에게 주거 지원 및 기본적인 생활편의와 상담 및 법률·의료·심리지원, 자활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기관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활용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시설 개요

- 시설명 : 시립 여울여성희망센터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(비공개대상 시설임)
- 시설규모 : 대지 592㎡, 건물 371.56㎡(지하1층~지상2층),
- 준공일자 : 1995. 5. 18
- 이용대상 : 성매매 피해 여성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

### 나. 주요위탁 내용

- 위탁기간 : 5년 ('13. 2.14 ~ '18. 2.13)

○ 위탁업무

- 시립 여울여성희망센터 관리·운영
- 성매매 피해여성 상담, 법률·의료·심리지원 및 직업훈련 지원 등 구조지원사업
- 성매매피해자 치료·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

○ 소요예산 : 230,000천원(2013년) ※ 2012년 223,863천원

○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 (재위탁)

#### 다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(지원시설의 설치)
-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-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)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○ 민간위탁 추진현황

- 1차 : 2004. 2.14 ~ 2007. 2.13(3년,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세계)
- 2차 : 2007. 2.14 ~ 2010. 2.13(3년,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세계)
- 3차 : 2010. 2.14 ~ 2013. 2.13(3년,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세계)

#### 라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市 직접 운영시 인건비 부분의 상당한 증가로 예산 낭비가 초래될 수 있고, 그로 인한 사업비 부분의 상대적 감소로 서비스 질 하락이 예상되며,

- 또한, 성매매피해여성 상담 및 자활 분야에서 전문적인 기술과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하고,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관리·운영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(지원시설의 설치)
  -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
  -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  - ③ 지원시설의 설치기준·신고절차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·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-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  -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
  -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-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)
  -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 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의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.

1. 위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위치 및 명칭
  2. 사회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대표자
  3. 위탁기간
  4. 위탁대상 사무 및 그 주요내용 등
- ③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

-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 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(개정 2009.07.30)

-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나. 기타사항

- 시립 여울여성희망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 
(여성정책담당관-14458, 2012. 9.17)